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14)

2025.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2814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석주 의원(찬성 30명)

나. 발의일자 : 2025년 0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5월 29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방문인력 종사자, 보육교직원,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장 방침이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이는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제3조)

다. 부정 및 중복수급의 비용 환수를 규정함(제4조)

라. 피해구제 안내를 규정함(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5. 6. 3.~ 2025. 6. 7.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제정안의 개요

1)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매년 350-50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1954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¹⁾.
- 2025년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4조에 따라 19개 감염병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자료: 질병관리청(2024)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1권), p.

1) 서인영, 신지연, 이동우(2024),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를 위한 백신 도입 우선순위 평가 결과, 질병관리청 정책보고.

- 이러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대상 질병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²⁾ 우리나라의 경우, ① 65세 이상 노인, ②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③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 임산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자료: 질병관리청(2024)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1권), p.

2) 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외 서울시의 ‘확대’ 지원 현황

- 한편, 서울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취약계층³⁾인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2) 자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검색일: 2025. 5. 30), 예방접종 정보.

3)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법 시행규칙」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과 밀접 접촉하는 방문인력, 장기요양요원, 보육교직원, 구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각 부서 자체 인플루엔자 지원 현황>

연 번	소관부서명	대상자	지원인원 (명)	총예산 (천원)	재원(%)	지원기간 (년,월)
1	돌봄복지과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인력	11,096	1,130,046	시비(100%)	2020년~현 재
2	돌봄복지과	만 64세 이하 서울 소재 장기요양기관 소속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31,923	1,300,000	시비(100%)	2019년~현 재
3	영유아담당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국공립 제외)	24,093	302,126	시:구(50:50)	2025.1.~202 5.4.(4개월) 한시지원
4	자치행정과	구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	29,016	368,951	시비(100%)	2025.1.~202 5.4(4개월) 한시지원

자료: 감염병관리과 제공자료(2025. 5. 30.)

- 이번 제정안은 서울시 각 실·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감염병 담당 부서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라 밝힘.

2 제정 취지 검토

-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면, ‘인플루엔자’라는 단일 감염병의 예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로 ‘한정’하기 보다 제명과 주요내용을 ‘예방접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2023년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631, 대상포진·자궁경부암 접종 비용 지원)」과 2023년 5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797)」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음.

2 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 제정안은 5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4조(비용의 환수)
제2조(시장의 책무)	제5조(피해구제 안내)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부 칙
제4조(비용의 환수)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검토의견) 「감염병예방법」 제4조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4) 「감염병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⁵⁾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안 제3조)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 노인 등과 집단시설 또는 다수와 밀접 접촉하여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나.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다.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문인력
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2.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검토의견) 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취약계층⁶⁾ 중 영유아, 노인 등 일부 계층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군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임산부 등과 밀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대한 포함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비용의 환수(안 제4조)

제4조 (비용의 환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검토의견) 제정안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지원비를 환수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제정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각종 문서 등 확인결과 **기 추진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기 추진사업] 서울시 부서별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부 기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육교직원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 예 산 : 35,491,060천원(예방접종 지원금액 포함)
- 참고문서 :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② 장기요양요원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 예 산 : 5,652,843천원(어르신돌봄종사자 무료 독감예방 접종비 1,300,000천원 포함)

③ 방문인력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 예 산 : 1,030,731천원(예방접종 지원금액 포함)
- 참고문서 : 「2025년 방문인력 예방접종 등 안전지원계획」

④ 아이돌보미 대상 예방접종

- 사 업 명 : 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년 <아이돌봄 지원(자체)>
- 예 산 : 6,767,630천원(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 133,000천원 포함)

자료: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담당관 작성

3 종합의견

-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면, ‘인플루엔자’라는 단일 감염병의 예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로 ‘한정’하기 보다 제명과 주요내용을 ‘예방접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취약계층 중 영유아, 노인 등 일부 계층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군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임산부 등과 밀접 접촉하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대한 포함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시에는 접종 지용 비원이 발생하나, ‘재정분석담당관’에서는 기추진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의안번호 2814		서울특별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강석주 의원(발의)		2025.05.26.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제정 필요성〉 ○ 서울시는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방문인력 종사자, 보육교직원,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장 방침이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입법요지〉 ○ 감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경과		○ 2025.05.26. 조례안 의원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등)이 아닌 특정 직업군을 명시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익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이 존재함. ※ 조례 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우려(50~64세 만성질환자 등 일반 시민 불만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확대 요구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실국 차원의 복지제도 등을 통한 현행 관리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 검토결과 : 조례 제정(안) 보류 의견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팀장	김연남(☎2133-7662)	담당	김은혜(☎2133-9634)